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1. 8 .판결선고	사무관
1989. 11. 8 .원본영수	

제 18 부

판 결



사 건 88가합 14661 손해배상(기)

원 고 1. 박 정 기 ()

2. 정 차 순 ()

위 원 고 들 주소 부산

3. 박 종 부 ()

서울 마포구

4. 박 은 숙 ()

부산

5. 인 제 근

서울

6. 권 인 숙

원주시

7. 김 동 완

서울

8. 박 종 운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빌지기재와 갑음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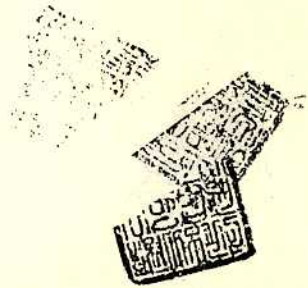
피 고 1.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허 형 구

소송수행자 김영옥, 곽인철, 박동주, 서정권, 김현구,
한경인

2. 조 한 경

안양시 호계동 458 안양교도소내



3. 강 진 규

원주시 원주교도소내

4. 왕 정 응

경주시 경주교도소내

5. 이 정 호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내

6. 반 금 근

안양시

7. 박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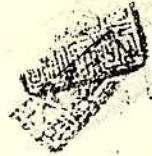
서울

8. 유 정 방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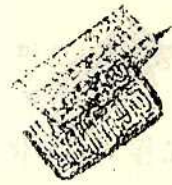
9. 박 원 택

서울



10. 강 민 창

서울



11. 장 세 동

서울

12. 이 해 구

서울

13. 김 성 기

서울 시

14. 이 영 창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걸(피고 2내지10,14에

대하여)

변호사 김준얼(피고11내지13에 대하여)

원,

변론종결 1989. 10. 18.

주 문

1.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 피고 박정기, 원고 이정호, 피고 반금곤은 인대하여 원고 박종부, 원고 정차순에게 각금46,952,409원, 원고 박은숙에게 각금5,000,000원및 각 이에대한 1988. 5. 11. 부터 1989. 11. 8.까지는 연5분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분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박처원, 피고 유정방, 피고 박연택은 인대하여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금5,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에게 각금2,000,000원및 각 이에대한 1988. 5. 11.부터 1989. 11. 8.까지는 연5분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분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강민창은 인대하여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금5,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
에게 각금2,000,000원및 각 이에대한 1988. 11. 17.
부터 1989. 11. 8.까지는 연5분의 그다음날부터 원고입
까지는 연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의
위 1항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및 피고 장세동,
피고 이해구, 피고 김성기, 피고 이영창에 대한 청구와
원고 권인숙, 원고 인재근, 원고 김동완, 원고 박종운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 원고 박종부, 원
고 박은숙과 위 1항기재 피고들과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이
를 5분하여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같은 원고들과 피고 장세동, 피고 이해구,
피고 김성기, 피고 이영창과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같은 원

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권인숙, 원고 인제근, 원고

김동완, 원고 박종운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3분에 2에 한하여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금100,000,000

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에게 각금25,000,000원, 원고

권인숙, 원고 인제근, 원고 김동완, 원고 박종운에게 각금1,000,000원및 각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부터 이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따. 소송비용은 피고

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어서 부

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름이 없는 강제19호중의1(배상

검정통지서), 2(배상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아뎨 본안에서 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하는 각 사실을 원인으로 서울지구 배상
심의회에 원고들이 입게된 재산적손해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지급
을 신청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1988. 8. 5. 같은 위원회로부터 위
배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
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확정

-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3호종의 38(감정서), 81(수사보고), 강
제4,7,9호종의2(각 범죠히지보고), 37(검증조서), 강제5호종의11,
강제8호종의14, 강제10호종의5(각 판갑), 강제8호종의7,8,10,11,
12,19(각 증인 신문조서), 강제8호종의 4내지6, 18(각 공판조서,
강제8호종의 4내지6은 을제8호종의 5내지6과 같음), 강제3호종의14,
15,41,57 강제4호종의8, 강제7호종의19,26,35,36,37,38,41,46,

49, 50, 51 강제9호증의 4, 6, 9 (각 진술조서), 강제3호증의 18, 19, 25, 29, 39, 40, 63, 64, 강제4호증의 4, 5, 6, 7, 9 내지 15, 18 내지 24, 27 내지 30, 33 내지 36, 강제7호증의 3, 9, 31, 32, 45, 47 강제8호증의 15, 강제9호증의 7 (각 피의자 신문조서, 강제3호증의 18, 19, 25는 음제4호증의 4, 5, 6 강제4호증의 3은 음제5호증의 4와 같음), 강제1호증(호적등본), 강제11호증의 1 내지 146, 강제15호증의 1 내지 28 (각 집건표 표지 및 내용), 강제18호증(신문기사), 강제19호증의 1 (배상결정통지서), 2 (배상결정서) 중인 박월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12, 13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임정숙, 신상문, 박명진, 박월길, 이종선의 각 증언에 반하는 천취지불 모아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강제8호증의 4 내지 6, 18 (각 공판조서), 강제7호증의 35, 36, 37 강제9호증의 4 (각 진술조서), 강제3호증의 18, 19, 25, 29, 39, 40, 63, 64 강제4호증의 3, 4 강제7호증의 3, 31 강제8호증의 15, (각 피의자 신문조서), 강제11호증의 1 내지 146, 강제15호증의 1 내지 48 (각 집건표 표지 및 내용) 강제18호증(신문기사),

2가
감제12 3(항선서)
감제19호증의2(배상결정서)의 각 일부기재와 감제3호증의27,28 감제
7호증의44, 을제8호증의9(각 자술서) 감제3호증의 7,8,21,22,23,
56,60,61 감제7호증의3,17,30(각 진술조서) 감제7호증의 3,33,
48(각 피의자 신문조서) 을제8호증의 9,16,17,19(각 증인신문조서),
을제8호증의 11,12 을제10호증의 5(각 변론기록), 을제8호증의13,
을제10호증의7(각 항소이유서), 을제8호증의8(종거제출), 10(참고
자료제출)의 각 기재및 증인 이종선의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
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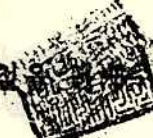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은 소외1 망 박종철의 부모, 원고 박종부
는 그형, 원고 박은숙은 그누이이고 아매(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같
은 이사건 불법행위 당시에 피고 조한경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
부 대공3부 5과 2계 소속 경위, 피고 강진규는 같은계 소속 경사,
피고 황정용은 같은계 소속 경위, 피고 반금곤은 같은계 소속 경사,

피고 이정호는 같은계 소속 경장으로 각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고, 피
고 박처원은 치안감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제5차장으로,
피고 유정방은 경정으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제5과장으로, 피고 박
원택은 경정으로 같은 수사2단 제5과 2계장으로 피고 강만환은 치안
총감으로 위 치안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었다.

(나)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 피고 왕정용, 피고 이정호, 피고 반금근
은 1987. 1. 5.경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학년생인 소외
망 박종철이 동교 민민부위원으로서 서울대학교 민주위 사건의 중요
수배자인 원고 박종운을 은닉하면서 동인과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박종철을 연행 수사하여 목진대상 수배자인 원고
박종운등 민민부지하 지도부 중앙조직원들을 검거하기로 수사계획을 세
운 후, 1987. 1. 14. 07:20경 피고 조한경, 피고 왕정용, 피고
반금근, 피고 이정호 및 소외 정태인(치안본부 대공 3부 5과 2계 소

속 경장), 같은 김병식(같은계 소속 순경)등이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6
의 26소재 위 박종철의 하숙집에 집결하여 동인을 연행, 같은날 08:00
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의1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 건물5층 제8호
조사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고 조한경이 위 박종철에게 동인의
인적사항, 조직, 사상관계등에 관하여 1차 신문을 하고, 2차로 같은날
10:40경 같은층 제9호 조사실로 신문장소를 옮긴 후에서 피고 조한경
및 동인의 지시로 같은 날 10:25경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 피고 강진규
가 수배자 원고 박종운의 소재에 관하여 위 박종철을 신문하였으나 동인
이 계속하여 위 박종운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자 가혹행위를 가하여 진술
을 받아낼것을 마음먹고, 피고 조한경은 피고이정호에게 위 제9호 조사
실 안에 있는 육조(길이123센티미터, 높이 57센티미터, 폭 74센티미터
의 인조대리석제)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한 후, 위 박종철이 위 박종운의
소재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박종철의 가슴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 강진규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등을 수회 때렸으나 위 박종철이 계속 모른다고 부
인하자 위 박종철의 옷을 모두 벗기던 후 물이 가득찬 위욕조 앞으로 데
리고 간 다음, 피고 조한경은 피고 이정호에게 제14호 조사실로 가서
그곳에서 소의 하종문을 신문하고 있던 피고 황정용 피고 반금근을 불러
오게 한 후 위 박종철에게 제차 원고 박종운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이
에 응하지 않자 나머지 위 피고들에게 위 박종철을  라고 지시하여
이에 피고 강진규, 피고 반금근이 조사실 안에 있던 수건을 사용하여 위
박종철의 양손과 발목을 걸박하고 나서 피고 반금근은 위 박종철의 오른
쪽에서 왼팔을 동인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고, 피고 황정용은
왼쪽에서 오른팔을 동인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붙잡아 함께
등을 누르고, 위 강진규는 욕조안에 들어가서 양손으로 위 박종철의 머
리를 잡아 물속으로 누르다가 한참 후에 끌어내는등 가혹행위를 2회내지
3회 반복한 후 다시 원고 박종운의 소재를 신문하였으나 역시 모른다고
하자 피고 조한경이 좀더 혼을 내주라며 제차 가혹행위를 지시하면서 피


고 이정호에게도 합세할 것을 지시하여 동인은 위 박종철의 겁박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피고들은 앞서와같은 방법으로 위 박종철의 머리를 물속으로 2회 내지 3회에 걸쳐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가하는 동안 위 박종철의 목부분이 위 육조의 턱(높이 57센티미터, 너비 6.5센티미터)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날 11:20경 위 제9호 조사실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위 박종철을 사망하게 하였다.(이하에서는 다만 이 사건사고라 한다)

- 2) 피고 박치원, 피고 유정방 피고 박원택은 1987. 1. 14. 11:20경 그 부하직원들인 피고 조한경, 강진규, 황정용, 반금근, 이정호등이 위 1)항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박종철을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위 수사2단 제9호 조사실로 연행하여 조사하던중 폭행, 물고문등의 가혹행위로 동인을 치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그무렵 현장확인과 보고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이에 관련된 위 경찰관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체 대공수사 경찰관들의 사기저하와 수사인력의 손실로 대공수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테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피고 조한경등의 위 박종철에 대한 가혹행
위의 내용과 가담자들을 위 1)항 인정사실과는 달리 축소언제할 것을 공
모하고서, 피고 박원택은, 같은해 1. 16. 19:00경 위 수사2단 5과
2계 사무실에서 위 피고 조한경등 관련 경찰관 5명을 모아놓고 앞으로
위 1)항 사실에 대하여 경찰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이미 상부에
보고한 바와 같이 위 1)항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 박원택, 피고 반금근,
피고 이정호는 위 박종철을 언행하여 왔을뿐 조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
고 그가 사망한 경위도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가 그를 조사하던중 피
고 조한경이 우측 주먹으로 책상을 "팡"치니 "억"하는 신음소리를 내면
서 앞으로 넘어져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같은달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에서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가 위 박종철을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혐의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중 부득이 물고문등의 가혹행위를 하였
다고 자백하게 되었으나, 피고 강진규, 피고 조한경이 그들만의 범행으

로 허위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동인들을 격려하면서 "바깥 걱정을 하지말라"고 말함으로써 피고 왕정용, 피고 이정호, 피고 반금근도 들고 문동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설득하고, 피고 유정방은, 같은달 17. 23:00경 위 특수수사 2대에서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위 박종철을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를 만나 그들에게 "부검결과가 짐식사로 판명되었다. 너희들이 속죄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달 1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같은 피고들에게 검찰에서도 위 경찰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말하여 이사건사고의 진상을 은폐하도록 설득하고, 피고 박치원은, 같은달 18. 13:00경 위 특수수사2대에서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위 박종철을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를 만나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가 그들만의 범행으로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피고들에게 "대공요원은 사상전이나 점선공작

중 충에 맞아 죽기도 한다. 다른 관련자가 더 있다 해도 다른 대공요원을 의생시키지 말고 들어서 책임지고 가마"는 말을 하여 이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도록 설득하여,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로 하여금 피고 황정용, 피고 반금근, 피고 이정호등도 위 박종철에 대한 물고문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황정용 반금근 이정호등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게 하여 이들을 도피하게 하는등으로 이사건사고의 진상을 은폐하여 위 망 박종철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위 원고들이 위에서 본 이사건사고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서 위에서 본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함과 아울러 위 원고들의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행위의 정당성 및 도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고 나아가 위 원고들로 하여금 위 은폐조작행위에 대한 경악과 분노를 일으키게하여 위 원고들의 정신적 안정성을 해하게하는등으로 위 원고들에게 정신상의 손해를 입게하였다.

3) 피고 강민창은 위 1)항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의사 황적준에 의하여 그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 후, 1987. 1. 15. 23:0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소재 치안본부장실에서 위 황적준으로부터 박종철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일뿐 아니라 외표소견상이나 내경소견상 가옥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보고 받았음에도 위 박종철의 사망경위 및 사인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같은 피고가 위 박종철의 사망경위 및 사인에 관하여 피고 박원택 등으로부터 허위 보고받고 그 진상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그 내용대로 소위 망 박종철이 피고 조한경으로부터 '조사받던중 피고 조한경이 책상을 "짱"치니 "억"하며 쓰러져 심장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의도모, 위 황적준에게 같은달 16. 08:00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함 부검소

건에 관한 메모의 작성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박종철의 부검소건에 관하여 의표소건으로는' (1)비, 구부에 표피박탈 (2) 둔부 좌측의 외측에 표피박탈 (3) 좌측 슬부 외측에 표피박탈 (4) 우측 손등에 피하출혈', 내경소건으로는' (1) 경부 좌.우측에서 피하출혈 (2) 흉부 우측에서 근육간 출혈 (3) 흉골 하단에서 수평으로 근육간 출혈 (4) 전.후두엽에서 두피하출혈 (5) 우측하입하면에서 출혈반'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제출받아 보고는, 의상이 있는 것으로 다시 메모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위 황적준이 마지못해 위 내경소건중 (1)내지 (4)를 뺀 내용의 메모를 작성 제출하자, 제차 의상부분에 관한 소건을 모두 삭제하고 요구하여 선뜻 응하지 않는 위 황적준으로 하여금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검소건 부분을 모두 떼고, 의표소건으로는 '사인이 될만한 특이한 소건을 보지 못함', 내경소건으로는 '우측 폐장에서 출혈반 소건이 인정됨'이라고 기재한 내용의 메모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위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종철의 부검소

건을 설명하면서 위 박종철이 피고 조한경등으로부터 폭행, 물고문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소견 부분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한편, 같은 날 15:20경 위 치안본부장실에서 위 황적준에게
같은 달 19. 까지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하여 감정서를 작성보고하도록
이사건사의 경위를 은폐하여
요구하는등으로 상 박종철과 위에서 본바와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위 원
고들로 하여금 위 2)항에서 본바와같은 정신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사실 인정여부

(가)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불법행위 이외에도, 피고 강민창, 피고 박처

원은 위 이사건사고 이후 위 대공본실에 찾아온 원고 박종부등이 위

박종철의 시신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 원고 박종부,

원고 박정기에게 더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아니하면 거액의 금전을

주겠다고 희유하고 이에 선뜻 응하지 않는 위 원고들에게 이에 응하

지 아니하면 위 박종철의 가족들에게 좋지 아니한 일이 일어날 것이

라는 협박을 하면서 원고 박정기에게 금95,000,000원을 강제로

교부하면서 더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케하여,
위 박종철의 유가족인 위 원고들을 매수, 협박하고 그 이후에도 위
원고들을 계속 감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며 하였고,
피고 강민장은 위 박종철이 묵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한 사
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그 소속 경찰관들도 하여금 위
박종철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고문치사의 영향을 변경하는 한편
고문의 증거가 남아있는 위 시신을 강제로 화장하도록 지시하여 피
고 박처원 및 치안본부 소속 성명미상 경찰관들이 1987. 1. 16. 벽
제와장터를 완전히 포위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 다음 와
장에 반대하는 원고 정차순을 경찰병원으로 강제 연행하여 감금하고
같은날 10:00경 와장을 강행한후 원고 박정기를 경찰차로 임진강
부근으로 강제연행하여 박근의 유골을 뿌리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박종철의 유가족인 위 원고들에 대한 매수 및 협박의 점에 관
하여 살펴보면 위 갑제12,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월길의 증언만으

로는 위와 같은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위 박종철시신에 대한 강제확장의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강제12,13호증, 각 공성부분에 다름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14호증위1(요구자료 송부), 2(확장신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월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박종철의 시신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확장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원고들은 다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던 피고 장세동은 1987. 1. 17.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박종철의 사망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이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정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 진상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이던 피고 이해구로 하여금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의 은폐, 축소조작과 국민들의 추모 및 향의집회 봉쇄등을 골자로 하는 정

부의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이해구는
당시 대통령사정담당 수석비서관이던 소외 김종건, 내무부장관이던
소외 김중호, 검찰총장이던 소외 서동권등과 함께 이른바 "관계기
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위 박종철의 사망사건에 관한 정부의 대책
을 논의한 끝에 "이 사건에서 고문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고문행위중 약간의 구마와 물고문만을 시인하
고 전기고문사실은 부인하여 고문의 잔혹성을 은폐한다. 관련자도
5명의 고문살인범중 2명만을 범인으로 발표한다. 이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고 경찰이 하며, 위 망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경찰
이 매수, 협박등을 통하여 무마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의 추
모행사와 항의집회등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항의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등의 기본방침을
결의하여였고, 위 김중호,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피고 김성기, 문교
부장관이던 소외 손제석, 민주정의당 사무총장이던 소외 이춘구등

은 같은날 이른바 "당정대책회의"라는 집회를 개최하여 위 박종철
의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방침에 따르되 관련자들은 행정적으로 문책하여 여론을 누마하며,
민정당은 야당의 국회국정조사권 발동요구를 저지하고, 문교부는 서
울대를 비롯한 대학생들및 대학교수들의 추모회 향의집회등을 봉쇄
하고, 내무부와 법무부는 국민의 추모및 향의집회를 봉쇄함으로써
이사건의 진상이 폭로되고 국민적인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로 결의하였으며 같은날 오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던 소의
정구영은 피고 김성기와 소의 서동권으로부터 위 "관계기관대책회의"
와 "당정대책회의"결과를 전달받고 이사건 주임검사로 하여금 그
결의 내용대로 수사방향을 잡아가도록 지시하였고, 소의 김종호는
피고 강민창, 피고 박치원등과 함께 위 회의결과에 따라 이사건을
앞서본바와 같이 은폐, 축소소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후 위와같
은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당정대책회의"의 결의 내용에 따라 피고

이해구는 피고 조한경과 피고 강진규가 수감된 영등포 구치소와 의
정부교도소등으로 찾아가 협박과 희유를 통해 그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였고 당시 서울시경극장이던 피고 이영창, 서울대학교총장
이던 소외 박봉식, 부산시장이던 소외이 김주호, 부산시경극장이던
소외 육기진등에 의하여 이사건진상의 은폐와 축소조작, 위 박종철
가족등에 대한 위협과 감시, 각종 추도및 향의집외에 대한 폭력적
지등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사고당시
에 피고 장세동이 국가안전기획부장, 피고 이해구가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피고 김성기가 법무부장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배척하는 일부증거 이외에는 같은 피고들과 위 소외
인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은 또 피고 이영창은 피고 강민창의 후임 치안본부장으로서
국내인권단체및 일부시민들이 준비위원으로 참가하여 구성한 "박종

철근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가 1987. 2. 7. 14:00경 서울 명동성당
에서 "박종철근 국민추도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집회를
개최하자 치안본부 산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려는 시민
들을 불법연행하였고 그의 전국각지에서 이루어진 추모행사를 폭력으로 해
산하였으며 그로부터 같은해 6월까지 전국각지에서 개최된 추모행사를
같은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제
용하는 일부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이영창이 원고들 주장의 위와같은 추도
회 및 추모행사의 개최를 불허하고 이를 금지하여 이에 참가하려고한 일부
시민들을 연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치안본부장으로서의 관계법
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같은 피고의 이와같은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수 없으며 그밖의 원고들 주
장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 피고 왕정웅, 피고

이정호, 피고 반금근은 위 1)항 인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불법 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및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공무원인 위 피고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및 위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위 각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언대관계에 있다할 것이며,

피고 박처원, 피고 유정방, 피고박원택은 위 2)항 인정행위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강민창은 위 3)항 인정행위의 불법행위자로서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공무원인 위 피고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위 각 피고들의 책임은 각각 부진정언대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2) 원고 권인숙, 원고 인제근, 원고 김동완, 원고 박종은의 위자료 청구권 유무

위 원고들은, 원고 권인숙은 소위 "부천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이고, 원고 인제근은 민청련의장인 소위 김근택의 처이며, 원고 김동완은 목사로서 위 박종철군에 대한 범국민추도위원회의위원장이었고, 원고 박종은 위 망 박종철의 학우로서 위 피고 조한경동이 위 박종철을 고문하여 그 소재파악을 하려했던 본인인데, 위 원고들도 위에서 인정된 피고들의 일련의 불법행위 및 위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박종철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위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인내의 정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원고들은 피고 장세동, 피고 이해구, 피고 김성기, 피고 이영창에 대한 위에서본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 및 피고대한민국은 그토인한 손해를 언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그런데 피고들은, 위 박종철의 유가족인 위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박정기, 원고 박종부는 1987. 1. 15.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같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9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원고들은 앞으로 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하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들및 위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영수증), 을제2호증(각서), 을제3호증(합의금 요구내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들은 1987. 1. 15. 13:00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2단장인 소위 전석틴의 지시를 받은 소위 이종선으로부터 합계 금95,000,000원(그내역은 원고들의 주택문제 해결비용 금30,000,000원, 원고 박정기의 노후대책을 위한 택시 2대 구입비용 금30,000,000원, 원고들의 부채청산비용 금30,000,000

원, 망 박종철의 장례비용 금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원고들은
위 망 박종철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
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울제2,3호
중 증인 박월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13호중(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박정기는 1987. 1. 15. 05:00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 본
부소속 성명미상자로부터 박종철이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치
안본부 대공본실에서 원고 박종부와 함께 위 박종철의 죽음을 확인한후,
원고 박정기가 피고 박원택에게 위 박종철이 사망하게된 경위를 묻자 피
고 조한경및 피고 박원택등이 위 (나)의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박종철이 피고 조한경등으로부터 폭행, 물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 조한경이가 위 박종철을 연행
하여 원고 박종운의 소재를 조사하는 도중 책상을 "짱"치니 위 박종철이
놀라 "억"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거짓설명하여 위 원고들은 망

박종철이 위 조한경등의 거짓설명과 같이 변사한 것으로 잘못 믿고 위
이종선으로부터 박종철의 변사사건 및 동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
기하는 행위를 압기도 하는데,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하면
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박종철이 위에서 본 고문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 할것이니 이를 가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 (1) 위에서 채용한 각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6호증의 1,2
(각 세별기대어명표지 및 내용), 강제17호증의 1,2(직종별입금실태
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본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

의 망 박종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1965. 4. 1.생의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21년9개월 남짓되며 그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45.31년이다.
- 2) 학력등: 이 사건 사고당시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부 1학년 교과과정을 원만히 모두 마친 신체건강하고 근면성실한 학생으로서 위 언어학과 회장을 역임하였고, 1987. 1. 13.부터 개강되는 동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일본어 강좌 수강신청을 마쳐두고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나머지1년의 교과과정을 마치게될 상당한 개인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 3) 소득실태: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7년도의 대졸학력 근로자중 경력1년미 만자의 평균임금은 월급367,109원 정도이다.
- 4) 가동년한: 일반근로자는 적어도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 5) 생계비: 국가배상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원수입의 40 퍼센트가 소요된다고 본다.
- 6) 위 가해경관들이 위 불법행위 당시 위 망인의 신분과 학력 경력등을 알고 있

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8. 2. 29. 위 대학을 졸업한


후 병역법이 정하는 2년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1990. 9. 1.부터 가동
년한인 55세가 끝나는 2021. 3. 31.까지 적어도 대졸학력 근로자중 경력
1년미만자의 평균임금 수준인 월급367,109원 상당정도의 수입을 얻을수 있
었다고 평가함이상당하다.

(3)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본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1990. 9.

1.부터 2021. 3. 31.까지에 위 망인이 상실한 가동능력에대한 총평가액중
위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 12분의 5분의 비율에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43,904,819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미
만및 원미만은 버린다.)

$금367,109원 \times 60 / 100 \times (238.8049 - 39.4780) = 금43,904,819원$


(4)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위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사건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금95,000,000원
을 수령하여 이득하였으니 위 금원은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이종선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되나,  위 이종선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위 원고
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망 박
종철이 고문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위 조한경등의 거짓
설명과 같이 변사한 것으로 잘못믿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하여 망 박종철이 고문치사 되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
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이종선으로부터 박종철의 변사사건및 동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압기로 하는데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내역의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인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들 주장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 박종철의 유족인 위 원고들에게 위 망 박종철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적몰의가 야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던 위 가해자들의 상급자인 위 이종선등으로부터 위 박종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것(위 금원중 금5,000,000원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지급된 것이라 하여도 위 원고들은 이사건에서 망 박종철의 장례비 지출로 인한 손해금 청구를 아니하고 있다.)이므로 위 금원 수령으로 위 원고들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 것이라고도 할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다만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점은 뒤에서 위자료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앞서 채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의 망 박종철이 당시 서울대학교 3

학년에 제학 중이면서 서울대학교 민주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배중인 원고 박종은군과 접촉이 있어 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인행되어 위 박종은의 소재를 추궁당하면서 철저히 외부와 고립된 곳에서 수사기관원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폭행과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저항조차 할수 없도록 겁박된 상태에서  하는 조직적 가혹행위를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부 말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망인의 가족들인 위 원고들로서도 위 박종철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조직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되고 또한 위 고문치사 진상의 은폐, 축소조작으로 말미암아 참을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직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 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본 위 가혹행위의 잔혹성과 반인간성, 위 은폐행위의 기만성과 반윤리성,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 원고들의 경악과 분노, 위 피고들의 신분과 직책, 위 원고들의 위 조위금 수령사실 (다만 위

176

에서 본 금원 수령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크게 참작하지 않는다) 그밖에 위 원고들^의 위 망 박종철과의 신분관계, 연령, 직업, 재산정도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위 (나)의 1)항 사실에 관한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30,000,000원,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 금10,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에게 각 금5,000,000원, 위 (나)의 2)항 사실에 관한 위자료로서 원고 박종부, 원고 정차순에게 각 금5,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에게 각 금2,000,000원, 위 (나)의 3)항 사실에 관한 위자료로서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 금5,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에게 각 금2,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 금43,904,819원과 위자료 금30,000,000원의 합계금 73,904,819원은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어 위 원

고들이 각금36,952,409원 (73,904,819원x1/2)씩을 각 승계취득
하였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 피고 황정용, 피
고 이정호 피고 반금근은 연대하여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금4
46,952,409 (36,952,409+10,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에게 각금5,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

타 이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 중의 1인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 5. 11.부터 이판결 선고일인 1989. 11.

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분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속진동
에 관한 특별법소정의 연2할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
한민국, 피고 박처원, 피고 유정방, 피고 박원택은 연대하여 원고 박
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금5,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
에게 각금2,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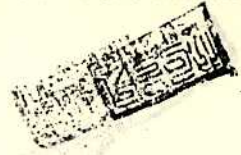
피고 대한민국, 피고 강민창은 연대하여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에게
각금5,000,000원,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에게 각금2,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위와같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
므로 원고 박정기, 원고 정차순, 원고 박종부, 원고 박은숙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
국, 피고 조한경, 피고 강진규, 피고 황정용, 피고 어정호, 피고 반금
곤, 피고 박처원, 피고 유정방, 피고 박원택, 피고 강민창에 대한 나
머지 청구및 피고 장세동, 피고 이해구, 피고 김성기, 피고 이영창에
대한 청구와, 원고 권인숙, 원고 인재근, 원고 김동완, 원고 박종은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제89조, 제 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원고들에
게 인용된 각 금원증 주문기제한도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1. 8.

제판장 판 사 이 규 용

판 사 이 명 와

판 사 왕 정 근



정문임비지

강봉제, 고영구, 이돈희, 이해진, 조영택, 조준희,
최병모, 최영도, 하죽봉, 홍성우, 황인철, 천정배,
김상걸, 김형택, 박원순, 백승헌, 이석태, 임재연,
조용환.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부

정본입니다.

198 1989. 11. 18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원 법원사무관 심정국

